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
----------	-----

발의년월일 : 1994. 7. .

발 의 자 : 정영태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4. 7. 6, 대통령령제14317호) 됨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속초시의회의원의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함 (안 제6조)
- 나.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속초시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중 "30, 000원"을 "50, 000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분	최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지동차운임	임비 (1일당)	숙비비 (1야당)	식비 (1야당)	주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정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최도임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식비에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선박에	1 등 정에	식비에	가동급25	가동급 130	가동급107	140	170	195
					나동급25	나동급 90	나동급 78			
					리동급25	리동급 72	리동급 58			
부의정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식비에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선박에	2 등 정에	식비에	가동급20	가동급 114	가동급 81	130	155	180
					나동급20	나동급 74	나동급 59			
					리동급20	리동급 55	리동급 44			
의정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최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식비에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최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식비에			리동급20	리동급 46	리동급 37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현 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u>식탁료</u> 로 구분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현 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u>30,000원</u> 으로 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u>50,000원</u>		
제8조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여비)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시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제8조 (삭 제)		

(별표1) (원 행)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 장 갑지					5,000	17,000	11,000	800
1등급	1등급액	정액	정액	정액				
부 의 장 을지					4,500	15,000	9,500	
갑지					4,500	14,000	10,500	800
의 권 1등급	1등급액	정액	정액	정액				
을지					4,000	11,500	9,000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
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개정 1992. 10. 29 조례 제1428호>

(별표 2) (후 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분화)

구분	최대유인	심비유인	항공	자동차	임	숙	식	준비금		
			유인	유인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이정	· 2명당이상이동 금구별이있는 경우에는차성 동일의최대유 · 동일구별이없 는경우에는1 승차에유하는 심비에	· 2명당이상이동 금구별이있는 경우에는차성 동일의최대유 · 동일구별이없 는경우에는1 승차에유하는 심비에	1동 정에	심비에	기동금 25	기동금 100	기동금 53	140	170	195
					기동금 25	기동금 79	기동금 46			
					기동금 25	기동금 60	기동금 40			
					기동금 25	기동금 25	기동금 33			
외정	· 동부성의기 무인하여금 유금또는최대 유금을필요로 하는경우에는 1심비에	· 동부성의기 무인하여최대 유금을필요로 하는경우에는 1심비에	2동 정에	심비에	기동금 20	기동금 83	기동금 48	130	155	180
					기동금 20	기동금 66	기동금 42			
					기동금 20	기동금 50	기동금 36			
					기동금 20	기동금 33	기동금 30			

(별표1) (개 정 안)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부 의 장							
의 원	2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동일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개정안)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비	식비	준비금		
								15일 비	15일이상 30일비	30일 이상
의정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인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심비에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심비에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인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심비에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심비에	1 등 정액	심비에	가동급25	가동급 130	가동급107	140	170	195
					나동급25	나동급 90	나동급 78			
					리동급25	리동급 62	리동급 49			
의정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인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심비에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심비에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인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심비에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심비에	2 등 정액	심비에	가동급20	가동급 114	가동급 81	130	155	180
					나동급20	나동급 74	나동급 59			
					리동급20	리동급 55	리동급 44			
의정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인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심비에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심비에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인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심비에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심비에	정액	심비에	리동급20	리동급 46	리동급 37			